# 용역 표준 계약서

	계약	<b>후번호</b>	<u> </u>		DTOL 프로젝트코드_20220623_01
계 약	"발주자"				업체명: 주식회사 디투엘 사업자등록번호: 113-86-04965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43-14 1309~1315 (가산동, 한화비즈메트로 2차) 전화번호: 02-839-4161 대표자: 이두희
자	"공급자"				이 름(상호): 이정원 주민번호(사업자번호): 710520 - 주 소: 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677, 201 동 1405 호 (삼환아파트 2 단지,만수동) 전화번호: 010-7364-9764 용역비수령계좌:
	계 약 5		명	GMES 기반 시운전 TRC 시스템	
계	계	약	금	액	금 오천육팔십육만원(₩ 56,860,000 원)
약	계	약	기	간	2022 년 06월 27일 ~ 2022년 12월 31일
내	특	이	사	항	
8	기			타	- 계약 내용이 변경 될 시 해당 계약 종료할 때 변경합의서로 재계약 진행 - 2021.07.01 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시행으로 총금액의 50%(월 11,410 원) 본인부담 비용 공제 후 대금 지급한다.(신분증 사본 필수 제출)

"발주자"와 "공급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계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 통씩을 보관한다.

2022 년 06 월 23 일

발주자 공급자

대 표 이 두 희

이 정 원

## 용역계약일반조건

#### 제 1 조(총칙)

주식회사 디투엘(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이정원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 제 2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견적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 제 3 조(채권양도)

- ① "공급자"는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용역대금청구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② "공급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발주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채권양도 서면승인 요청에 대하여 계약이행을 위한 목적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공급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4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 제 5 조(용역의 착수)

-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본 계약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와 "공급자"가 별도 협의한 경우에는 착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본 계약의 착수 이후에 "공급자"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전적으로 응하여야 하고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여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발주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공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 6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공급자" 상호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의 고객에 의해 "공급자"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일정변경, 프로젝트 취소 등으로 인한 계약 변경 사유발생시에는 "발주자"과 "공급자"은 상호합의 없이 본 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 제 7 조(보고 및 자료제출)

- ① "공급자"는 "발주자"의 요구 시 중간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급자"는 계약만료일까지 용역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검사)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제 2 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 2 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 ④ 제 3 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⑤ "공급자"는 제 2 항의 규정에 대한 검사에 입회, 협력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9 조(일반적 손해)

- ① "공급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 3 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발주자"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 10 조(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다.
- ② 제 1 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1. 검사를 필 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 2. 제 9 조 제 1 항 단서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
- ③ "공급자"는 제 2 항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발주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공급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 제 11 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의 수행에 제 3 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공급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공급자"에게 제반 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 12 조(대가의 지급)

- ① "공급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방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2 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3 조("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발주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3.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공급자"는 용역계약서에 정한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환성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의 완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완성물에 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발주자와 공급자는 고객사와 협의하여 이를 이행한다.
-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공급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 제 14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발주자"는 제 13 조 제 1 항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 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 13 조 제 2 항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③ "공급자"는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제 15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 ①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말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당해 계약의 결과로 취득하는 완성품,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보고서 판권 등은 "발주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안서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다른다.

## 제 16 조(장비)

- ① "공급자"는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장비, 재료, 사무용품 등을 자기비용으로 조달하여야 하며, 만약 "발주자"가 본 업무와 관련한 장비 등을 "공급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여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등 기타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② "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 업무의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 제 17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① 계약당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및 정부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 ② "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 시행령 제 76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 76 조 제 1 형 제 1 호 내지 제 5 호, 제 7 호 내지 제 8 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재를 받게 된다.

## 제 18 조(분쟁의 해결)

-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공급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분쟁해결의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 19 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 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특수조건

## 제 1 조(정의)

본 용역계약(이하"용역"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본 계약특수조건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 조건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인하며 주식회사 디투엘을 "발주자"라 정하고 이정원 을(를) "공급자"라 칭하며 다음 각 조항을 적용한다.

## 제 2 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용역의 이행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주자"와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 제 3 조(용역의 범위)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발주자"가 제시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로 한다. 단, "발주자"는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이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공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 4 조(용역 수행)

- ① "공급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즉시 본 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는 감독 이외에서 "발주자"가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③ "발주자"는 "공급자"에게 사업진행상황과 내용설명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 5 조(용역의 수행방법)

- ① 용역의 수행은 "발주자"와 "공급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행 가능하다.
- ②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발주자"가 제시하는 계약조건과 기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방향설정과 문제점의 제기 등을 할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수행을 할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 1.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활동(면담 및 조사)시 협조 및 지원
  - 2.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자료 제공

## 제 6 조(보고서 제출)

"공급자"는 용역이 종료된 후 계약기간 이내에 용역 완료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본 용역기간으로 하며, 용역수행 사정상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할 시에는 용역상황에 맞추어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발주자"의 통보에 의하여 용역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단축되는 것으로 한다.

## 제 8 조(용역수행에 따른 협조)

- ① "발주자"의 원청 요구로 인해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력에 대해 "발주자"의 정규직(단시간 근로자계약)으로 본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으로 "발주자"의 정규직(단시간 근로자)계약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자"은 이에 응해야 한다.
- ② ①항의 경우 정규직(단시간 근로자)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추가 발생하는 4 대보험료, 퇴직금, 기타 정규직 수당 등 모든 비용은 본 계약서의 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한다.
- ③ ①항의 경우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력은 본 용역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
- ④ "발주자"의 원청 요구로 인해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력이 "발주자"의 정규직(단시간 근로자)으로 계약하는 것은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수단일 뿐이며 "발주자"의 정규직 신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인력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9 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

- ① 용역대가 금액 및 지급시기
  - 1. 대금은 기성고율 또는 투입 MM 기준으로 대금을 분할하여 익월 10 일에 지급한다.
  - 2. 수행일자가 한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일수로 계산한다.(1,000 원미만 절사)
  - 3. "발주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의해 용역 대가 및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용역대가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경비 등 기타 모든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발주자"는 제 1 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